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24호 2018. 6. 22.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공 고**

○ 대이동굴관광센터 공고 제1호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대이동굴관광센터 공고 제2018-1호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삼척시장**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7년도 환선굴 운영에 대한 본 조례가 제정되고 2007년 대금굴 관리운영이 더해지면서 감면대상과 감면적용율, 요금표 단순화 등 수회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개정하여 온 취지를 반영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제3호)
- 동굴 모두 관람 시 “공원입장료” 1회 징수를 명시함(안 제3조제3항)

- 면제와 감면대상자를 구분 나열하여 명확히 함(안 제4조, 제5조)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의 대강을 정함(안 제5조)
-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삭제(매표 및 검표)
- 중복감면 배제 규정을 정함(안 제20조)
- 요금액과 요금표를 표준화(안 “별표1” )
  - 환선굴, 대금굴 공원입장료를 동일 요금액으로 정함
- 감면대상자별 “감면정수 요금액” 을 명시함(안 “별표4” )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대이동굴관광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대이동굴관광센터(우 25942)
  - 연락처 : 삼척시청 대이동굴관광센터 관리운영부서 (033-570-3256)
  - F A X : 033- 570-3178

###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http://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37조, 제38조에 따라 대이리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금액과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공개관람케 하고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이란 7세 이상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4항의 병장 이하의 병(의무경찰, 사회복지무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노인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관람료”란 환선굴 또는 대금굴 내부를 관람하기 위하여 동굴 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입장료”란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이용료”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점용료”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점용 및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 공원 및 환선굴, 대금굴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관람권, 시설이용권을 각각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

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를 징수한다.

- ③ 입장권,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은 당일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굴과 환선굴 모두 관람할 경우 입장료는 대금굴 입장료만 징수한다.
- ④ 입장권,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 ⑤ 대금굴의 입장료, 관람료, 시설이용료는 통합 징수한다.

**제4조(요금의 면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 1. 국민·외교사절 및 수행하는 사람
- 2.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 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환선굴 시설이용료는 “별표 2”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 공원구역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사람
  - 4. 관내 초등학교생
  - 5. 신기면 주민
  - 6. 삼척시민
  - 7.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 8.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감면자에 대해서는 단체요금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8호의 감면시한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출입증)** ① 제5조제1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출입증의 발급신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영업주의 발급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발급한다.
- ③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영업주가 회수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시장은 관람시간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원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의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 2. 시설의 입장, 관람 및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3. 시설의 개·보수 및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9조(게시사항)** 공원 입구 및 환선굴·대금굴 입구에는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명칭
- 2. 시설의 관리자
- 3.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요금표
- 4. 입장 및 관람시간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굴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 3. 음주 및 동굴 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마그네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결제한 경우에는 입장일 7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제한 금액의 전액을, 입장일 6일에서 3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80%를, 입장일 2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70%를, 입장일 1일 이전부터 입장당일 지정일시 경과 이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60%를 환불하고, 지정일시가 경과된 미사용 입장권에 대하여는 지정일시 경과 후부터 30분 이전까지 결제금액의 40%를 환불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및 사용료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1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하기 전에 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점용해지신고)** 공원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회복)** 공원의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점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해지한 경우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5배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위탁관리)** ①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시설의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대상, 기간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제5조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입장료·관람료·시설이용료 요금액 (제3조 관련)

○ 환선굴

(단위 : 원)

구분		계	입장료	관람료
개인	어른	4,500	1,500	3,000
	노년 청소년	3,000	1,000	2,000
	어린이 군인	2,000	500	1,500
단체	어른	4,000	1,000	3,000
	노년 청소년	2,500	500	2,000
	어린이 군인	2,000	500	1,500

○ 대금굴

(단위 : 원)

구분		계	입장료	관람료	시설이용료
개인	어른	12,000	1,500	4,500	6,000
	노년 청소년	9,000	1,000	3,000	5,000
	어린이 군인	6,000	500	2,000	3,500
단체	어른	10,000	1,000	4,000	5,000
	노년 청소년	8,000	500	2,500	5,000
	어린이 군인	5,000	500	1,500	3,000

[별표2] 환선굴 시설이용료 요금액(제3조 관련)

○ 시설이용료(모노레일)

시설명	구분	이용료		비고
		왕복	편도	
환선굴 모노레일	어린이	3,000	2,000	
	만 13세 이상	7,000	4,000	

[별표3] 감면정수 요금액(제5조 관련)

○ 환선굴

(단위 : 원)

구분		계	입장료	관람료
개인	국가유공자	무료	무료	무료
	장애인	무료	무료	무료
	공원구역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사람	무료	무료	무료
	신기면 주민	무료	무료	무료
	삼척시민	2,000	500	1,500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2,000	500	1,500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00	500	1,500

○ 대금굴

(단위 : 원)

구분		계	입장료	관람료	시설이용료
개 인	국가유공자	3,000	무료	무료	3,000
	장애인	6,000	무료	무료	6,000
	공원구역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자	6,000	무료	무료	6,000
	관내 초등학생	3,000	무료	무료	3,000
	삼척시민	6,000	1,000	2,000	3,000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6,000	1,000	2,000	3,000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000	1,000	2,000	3,000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